##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903 발의연월일: 2021. 8. 4.

발 의 자:서영석・이정문・이용선

이용빈 · 안민석 · 문진석

홍정민·조정식·설 훈

김홍걸 · 김남국 · 김윤덕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, 학교 구강보건사업, 모자·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.

그런데,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경우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영구치배열이 완성되기 때문에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에 필요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 진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. 초등학생 시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성인이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·증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수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

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(안 제2조, 제5조). 법률 제 호

##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"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"이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구강검사, 구강질환 예방진료, 구강보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5조제2항제3호 중 "구강보건사업"을 "구강보건사업(초등학생 치과주 치의사업을 포함한다)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4. "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"이
	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
	를 위하여 구강검사, 구강질환
	예방진료, 구강보건교육 등을
	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.
제5조(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	제5조(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
립) ① (생 략)	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
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학교 <u>구강보건사업</u>	3 <u>구강보건사업(초등학생</u>
	치과주치의사업을 포함한다)
4. ~ 8. (생 략)	4. ~ 8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